

우리는 가구당 1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도로 등 교통 환경도 크게 개선돼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된 지 오래다. 그러나 개인의 교통수단 발전에 비해 대중교통 체계는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우리 고성지역의 경우 대중교통 체계가 주민의 생활에 그다지 편익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다. 대다수 서민들은 아직도 어디를 갈 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데도 말이다.

우리의 일상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시내버스다. 시내버스가 없다면 우리는 이웃과 서로 만나 어울리며 더불어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시내버스는 우리 삶을 서로 이어주는 가교 같은 것이다. 그래서 항상 교통망은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모세혈관 같이 연결시킨다. 교통이 끊기면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끊어져 표류하기 때문이다. 서로 소통하며 고성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키우고 고성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중교통은 삶을 이어주는 가교**

잘 정돈된 교통망도 중요하지만,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교통비용'을 줄여 주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지나치게 많은 교통비용은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빈곤하게 한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가 이웃에게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갈 권리(교통권)는 비용면에서도 보호되어야 한다. 특히 서민의 발인 시내버스는 정말 제대로 적시적소에 운행되고, 버스비도 재정지원을 통해 이용자가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해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 고성지역의 현실은 답답하기만 하다. 고성의 시내버스 노선 중 출발점과 종점이 고성인 노선은 6개에 불과하고, 운행횟수도 하루 21회가 고작이다. 그 외 노선은 전부 속초에서 출발해 속초에서 끝난다. 이는 우리 고성 이 속초시로 편입된 것과 같은 현상이다. 이런 교통망은 고성만의 문화와 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

**발행인 칼럼**

윤 승 근



**고성 중심의 시내교통망을 짜자**

사람과 돈을 실어 나르는 것이 교통망이다. 속초 중심으로 교통망이 구성되면 고성의 돈과 사람이 속초로 가게 된다. 간성시장이나 거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것도, 고성의 영터리 시내버스 체계와 연관이 있다. 교통망을 따라 시내버스가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속초로 실어 나르는 상황에서, 고성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속초지역의 시내버스 요금은 거리에 상관없이 천원이다. 그러나 고성지역 시내버스 요금은 간성~봉포 2,400원, 간성~대진 1,670원으로 거의 두배에 가깝다. 간성~거진은 가장 가까운 거리인데도 1,040원이다. 같은 고성지역인 용춘~대진까지는 무려 4,160원이다.

출퇴근 등을 위해 한달에 25일 정도 간성~봉포 구간을 왕복 이용할 경우 1인당 12만원의 버스비가 든다. 3인 가족이 이용할 경우 가구당 36만원이다. 서민에게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속초 중심의 시내버스 체계 문제**

같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고성 주민들이 속초시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속초시가 중심이 된 요금 계산 때문이다. 우리 고성주민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속초 중심의 버스 체계가 이런 모순을 만들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성 중심의 버스체계를 다시 정비해야 한다. 특히 고성군에서 예산을 효과적으로 배분해 주민들이 교통비를 걱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래야 고성 이 고성답게 발전할 수 있다. 주민의 발이 되는 교통망 정비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된다.

교통행정에 대한 관심과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운송회사의 부담 가중 등을 원인으로 협조가 제대로 안될 경우에는 고성운수회사를 설립하거나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등 장기적인 대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박형수 변호사의 생활법률**



**채권최고액 변제하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가능한지**

**문** 갑은 을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갑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채권최고액을 5,000만원으로 정하였는데, 갑의 을에 대한 위 채무의 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이 위 채권최고액만 변제하면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답** 근저당권에 관하여「민법」제357조는 “①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전항

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60조에서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자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총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 위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면 근저당권말소등기청

구가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원래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이것이 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로서는 그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 채무의 일부인 채권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만을 받고 근저당권을 말소시켜야 할 이유는 없을 뿐 아니라, 채무금 전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변제가 있는 경우에 이로써 우선 채권최고액 범위의 채권에 변제·충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도 없으니,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

지 근저당의 효력은 잔존채무에 여전히 미친다고 할 것이고, 근저당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차순위 담보권자, 담보물의 제3취득자 및 단순한 물상보증인으로서의 근저당권설정자에 대한 관계에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갑은 위 근저당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가의 '조용한 습격자, 너울' 우리 모두 예방하자**

지난 3월 11일 오후 일본 근해에서 규모 9.0의 강진의 발생으로 초대형 쓰나미가 일본 열도를 강타했다. 마치 영화 '해운대'를 연상 시키듯이 파도가 해안뿐 아니라 내륙의 논과 밭, 건물 등을 가리지 않고 집어 삼켰다.

그런데 해안가에 발생하는 재해는 지진해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2009년 1월 강릉 주문진항에서 너울성 파도에 의해 관광객 3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해 8월 부산 송도 갯바위에서 낚시

객 한명도 파도에 휩쓸려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도 있었다. 이런 너울성 파도는 예측이 매우 어려운 조용한 습격자로 해안가의 관광객이나 낚시꾼들이 대처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사고를 발생시킨다.

그럼 이렇게 우리 삶에 피해를 일으키는 너울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파도는 바람에 의해 발생한다. 바람에 의해 미세한 파도가 나타나다가 풍속이 1~2m/s 이상이 되면 보통

풍랑이라고 하는 파도가 된다. 이에 비해 그 장소에 바람이 없어도 멀리서 전해져 오는 파도가 있는데 이를 너울이라고 한다. 마루가 뾰족한 풍랑과는 달리 너울은 파도의 마루가 둥그스름하고 그 가로폭이 수십m, 길 때에는 100m에 달한다. 너울은 이렇게 파장이 길고 둥그스름해 멀리서 전해져 올 때는 알아채기가 힘들다. 너울이 해안으로 도달해 방파제에 부딪으면 그 위력이 일반적인 파도에 비해 최대 30~40배

는 증가해 많은 피해를 야기한다. 이처럼 너울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고 그만큼 대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당국에서는 해안가에 방송시설을 설치하는 등 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사고 홍보 등 안전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기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해안가 주변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너울에 대한 대처 요령을 미리 파악하고, 풍랑특보나 태풍특보 등이 발효 되면 해안가나 방파제 근처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특보가 해제되더라도 만바

다에서 밀려오는 너울 특성상 여전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지 말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낚시꾼은 구멍조끼와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고 혼자 낚시를 하는 것은 자제하자.

여름에 접어들면서 우리 동해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바다에는 미처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 돌발상황이 많으므로 스스로 안전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최소한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속초기상대 제공)